



1670-1279

- ▶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방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 ▶ 올바르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를 발견한 경우
- ▶ 특허청 로고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 ▶ 지식재산권이 흐릿하게 표시되어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 표 전 화 : 1670-1279

이 메 일 : 1279@koipa.re.kr

온라인 신고 : <https://www.ip-navi.or.kr/falsemark>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01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란,

지식재산권 등록 또는 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식재산권 표시 또는 지식재산권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포장·용기, 광고, 간판, 표찰 등에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제224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상표법 제224조, 디자인보호법 제215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01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02 지식재산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는 행위



03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는 행위



04 지식재산권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록 표시를 하는 행위



05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여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는 행위
(예: 디자인 등록을 받았는데 특허 표시를 하는 경우)



06 지식재산권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하는 행위



기타 부당한 지식재산권 표시

- 특허청 로고의 부당한 사용 행위



-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부당 광고하는 행위



- 불명확한 지식재산권 표시



02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특허법 제228조, 실용신안법 제48조, 디자인보호법 제222조, 상표법 제233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되는 제3자를 포함한 누구나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가능

사건 판례



실용신안법 위반

징역 4월

잡화 수입·판매업체인 무역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실용신안등록 표시가 된 차광모자를 판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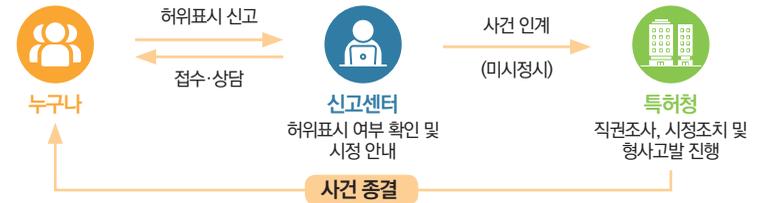
해당 차광모자는 실용신안을 등록한 물건이 아닌데도 중국 제조업자가 차광모자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 표시를 한 그대로 수입하여 전시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679)

03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 처리

정부(특허청)에 민원 신청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



주요 적발 사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판매 중지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사업자 甲은 제품 A를 판매하면서 특허 등록된 기술이 활용되었다는 판매글을 작성

그러나 그 기술은 甲이 판매중인 다른 제품인 B와 연관된 특허였고, 해당 판매글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甲의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시정요청 하였으나 甲은 판매글을 시정하지 않았고, 결국 제품 A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 중지되었음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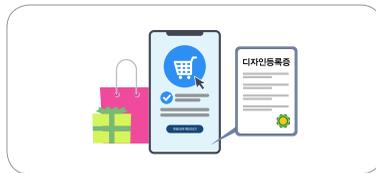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지식재산권 표시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지식재산권	구분	표시방법
특허	등록	특허 제10-0000000호 방법특허 제10-0000000호
	출원	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방법특허출원(심사중) 제10-0000-0000000호
실용신안	등록	실용신안등록 제20-0000000호
	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중) 제20-0000-0000000호
디자인	등록	디자인등록 제30-0000000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심사중) 제30-0000-0000000호
상표	등록	상표등록 제40-0000000호
	출원	상표등록출원(심사중) 제40-0000-0000000호
인터넷 표시	등록이나 출원사항 및 관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 QR코드, 인터넷 주소 등 기재	



지식재산권 표시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QR코드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한 표시와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대요?



네,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확인가능한 출원/등록 정보는 QR을 통해/서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QR을 활용하면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연결되고, 출원/등록 등의 법적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특허청의 캐릭터
'키키 포포'를 예시로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키프리스에서 **'키키 포포'**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1건 검색

등록 키키 포포 kiki popo



상품분류:

출원(국제등록)번호: 4220110000004

등록번호: 4200041720000

출원공고번호: 4220110091192

도형코드: 020522 020523

출원인: 대한민국(특허청장)

출원(국제등록)일자: 2011.01.06

등록일자: 2012.03.08

출원공고일자: 2011.12.06

대리인: 이재성

키키 포포 kiki popo

상세정보 | 출원공고 | 등록사항 | 통합행정정보

서지정보 | 인명정보 | 도형분류(비엔네)코드 | 할정처리 | 상표설명/지정상품 | 마드리드 출원정보

도면일괄보기



(51) 상품분류

(220) 출원번호(일자) 4220110000004(2011.01.06)

(731) 출원인 대한민국(특허청장)

(111) 등록번호(일자) 4200041720000(2012.03.08)

(260) 출원공고번호(일자) 4220110091192(2011.12.06) [전문다운](#)

(112) 등록공고번호(일자)

(641) 원출원번호(일자)

(300) 우선권주장번호(일자)

관련출원번호

공통상태지표



등록 ?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일자) 등록결정(일반)(2012.03.08)

소급구분(일자) (2011.01.06)

심판사항

구분 국내상표, 도형복합

[다운로드](#) [크게보기](#)



서지정보에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QR을 다운로드 받아 저작권 표시 방법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

Q 거절 결정이 확정된 이후 특허출원 제품에 특허출원표시를 하는 것이 허위표시에 해당하나요?

A 거절 결정된 이후에는 특허출원 중이 아니므로 허위표시에 해당됩니다.

Q 특허 등록이 되었다면 특허청 로고만 사용한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허위표시에 해당하나요?

A 특허를 등록받지 않았음에도 등록받은 것처럼 특허청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나 특허청 인증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한 기타 부당한 지식 재산권 표시 유형으로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불명확한 특허증 게재 역시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리 번호 등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입니다.

Q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로서 제품에 ®표시를 한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하나요?

A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이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위조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타인의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무단 도용하여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위조상품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ippolice@korea.kr)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 www.ippolice.go.kr) 로 문의바랍니다.



위조상품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1666-6464 ✉ ippolice@korea.kr 🌐 www.ippolice.go.kr

Q 무효심결의 확정,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특허표시(특허 제10-0000000호)하는 것은 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A 어떠한 이유든지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 특허 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Q 특허 받은 제품에 특허번호를 생략한 '특허'의 표시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나요?

A 특허 받은 제품일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정확한 특허 표시 방법은 아닙니다.

Q 특허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특허 받은', '특허 등록된'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이 허위표시에 해당하나요?

A 출원은 아직 등록된 상태가 아니므로 특허 출원 중인 제품에 '특허 받은', '특허 등록된'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Q 제 상품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상담센터에서는 허위표시 신고접수 외에도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과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익변리사센터 (02-6006-4300, www.pcc.or.kr)를 통해서도 지식재산권 표시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궁금증 상담은?

공익변리사센터
☎ 02-6006-4300 🌐 www.pcc.or.kr